

신용거래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거래용자”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5. “대용증권”이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제5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① 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용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신용거래용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용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권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고객은 신용거래용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권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권등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용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받는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제8조(담보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을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3자에게 대여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대여 등에 동의한 고객에게 <별첨>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산정되는 이익을 제공한다.

④ 회사는 담보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 등의 수익금 또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다만, 고객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결권 등을 사전에 안내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담보유지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10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용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용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3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권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권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8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

부 칙 (2009.2.4)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4)

이 약관은 200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17)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14)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

이 약관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3)

이 약관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0)

이 약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 23)

이 약관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 1)

이 약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7. 30)

이 약관은 201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 1)

이 약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6)

이 약관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6)

이 약관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6)

이 약관은 201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5)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

이 약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

이 약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추가담보증권의 확대(제7조 3항)와 임의상환방법(제10조3항)에 관련된 내용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3)

이 약관은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23)

이 약관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22)

이 약관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21)

이 약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9)

이 약관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

이 약관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30)

이 약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3)

이 약관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 고객 1인당 신용거래용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용자의 통합 한도 20 억원 (신용거래용자 20 억원, 신용거래대주 20 억원, 예탁증권담보용자 20 억원)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본형	안정형	대용형(적극형)
용자	40% 종목군	45%(현금 35%,대용 10%) :용자금 65%	45%(현금 45%) :용자금 55%	45%(대용 45%) :용자금 100%
	50% 종목군	50%(현금 40%,대용 10%) :용자금 60%	50%(현금 50%) :용자금 50%	50%(대용 50%) :용자금 100%
대주		대용 100% (수수료 및 거래세는 현금납부)		

- 대용형(적극형)

- * 고객등급 GOLD 이상 및 담보비율 150% 이상인 경우만 신청 가능함
- * 신용 매수 시 증거금은 대용으로 우선 징수하고, 대용부족 시 현금으로 징수함
- * 수수료는 용자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납부 해야 하며, 미수 계좌인 경우 미수금 변제 후 대용사용이 가능함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간
신용용자	자기용자	90 일 이내(용자일 포함)
	유통용자	90 일 이내(용자일 포함)
신용대주		60 일 이내(만기연장 불가)

- 대용형(적극형)의 경우 만기연장은 원 담보비율이 140% 이상인 경우만 가능함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기본 담보유지비율: 140%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담보유지비율이 130%미만 : 추가담보요구일포함 1영업일
- 담보유지비율이 140%~130%이상 :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2영업일

- 5-1. 제8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 거래일에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 등 활용한 종목에 대한 회사분 발생 이익을 받은 후, 고객의 담보활용에 동의한 수량만큼 안분하여 합산하며,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한다.(회사 제비용 40% 공제)

· 고객 지급이익(종목별) = 증권금융에서 받은 회사분 발생 이익 × 해당고객동의수량/총

고객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 등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해당종목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익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예시)

××월 ××일 00전자 회사분 발생이익 10,000원 입금
회사 비용 4,000원 공제 후 6,000원 고객에게 지급

××월 ××일 00전자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담보활용주식수	지급수수료
A고객	100주	1,000원
B고객	200주	2,000원
C고객	300주	3,000원
합계		6,000원

* 지급수수료는 세금공제전 금액임

6. 제10조제3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text{담보유지비율} = \frac{[\text{기준가격} \times (\text{보유수량} - X)]}{[\text{신용공여잔고} - (\text{매도가격} \times X)]}$$

$$\text{주식처분수량}[X] = \frac{(\text{신용공여잔고}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text{전일종가}) \times \text{보유수량}}{(\text{매도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text{전일종가})}$$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담보유지비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제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함

ㄱ. 담보유지비율 130%이상인 경우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2영업일 경과 후, 전일 종가대비 하한가로 적용

ㄴ. 담보유지비율 130%미만인 경우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추가담보요구일 다음날(추가담보요구일 포함 1영업일), 전일 종가대비 15%할인된 가격 적용

(단, 임의상환 실행 후 그날 종가 기준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연속으로 임의상환이 실행되며, 이 경우 하한가로 임의상환 수량이 산정됨)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 수량 산정]

예시) 투자원금 400만원, 대출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10,000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

임의상환 수량 산정 산식(매매수수료, 세금,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D 일 장중	10,000 원	10,000,000 원	166%	
D 일 장마감	8,500 원	8,500,000 원	141%	
D+1 일	8,300 원	8,300,000 원	138%	추가담보 납부 요구
D+2 일	8,100 원	8,100,000 원	135%	추가담보미납 (30 만원 담보부족)
D+3 일	<p>매도가격을 전일 종가(8,100 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5,670 원)으로 산정하여 임의처분 수량: $1,000 \text{ 주} = \frac{(6,000,000 \text{ 원} \times 1.4) - 8,100 \text{ 원} \times 1,000 \text{ 주}}{(5,670 \text{ 원} \times 1.4) - 8,100 \text{ 원}}$</p>			

② 미상환시 임의상환(반대매매)

미상환용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생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단,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 수량산정]

예시) 투자원금 400만원, 대출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10,000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

임의상환 수량 산정 산식(매매수수료, 세금,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ㄱ.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12,000 원	12,000,000 원	200%	
D+1 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대비 -15%인 10,200 원으로 할 경우, 신용용자금인 600 만원(6,000,000/10,200=589)을 상환하기 위해 589 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ㄴ.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5,000 원	5,000,000 원	83%	
D+1 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대비 -15%인 4,250 원으로 할 경우, 신용용자금인 600 만원(6,000,000/4,250=1,412)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75 만원을 추가 납부			

8.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미상환용자금 발생계좌

- 자동 현금상환 → 미상환용자금 종목 → 미상환용자금 종목 전량 결제 후 상환금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 미수 처리
- 현금 미수 처리시, 현금미수 반대매매 기준에 따름

② 담보부족 계좌

- 자동현금상환 → 신용용자주식 → 신용대주주식 → 담보대출주식 → 담보대출채권 → 담보대출ELS
(주식임의처분 순서 : 용자일 빠른 순 → 종목번호 빠른 순)

9.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처분일 오전 08시 50분까지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용자 기간	적용금리
1~7일	4.9%
8~15일	6.5%
16~30일	7.0%
31~60일	7.5%
61~90일	8.0%
91일 이상	8.5%

※ 이자 적용방식 : 소급법

소급법이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 용자 이자 계산 사례(용자금 1억원, 대출기간 70일, 1/2~3/13)

비고	이자종류	이자금액	계산식
2월 첫영업일	정기이자	556,164원	1억 X 7.0% X 29일/365
3월 첫영업일	정기이자	615,069원	(1억 X 7.5% X 57일/365) - 556,164
상환일	상환이자	363,013원	(1억 X 8.0% X 70일/365) - 1,171,233
	합계	1,534,246원	

※ 보통년은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11.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매월 초일(최초 정기이자선 신용공여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익월 첫 영업일에 납입한다

12.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율은 실제 용자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고객에게 적용되는 만기내 용자 기간별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체가산이자율(3%P)을 합산하여 최대 연 11%에서 결정된다.

※ 보통년은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13. 기타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